

제 21 장 예 의

제 21.1 조 정 의

이 장의 목적상,

조세협약이라 함은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한 협약이나 그 밖의 국제 협정 또는 약정을 말한다.

제 21.2 조 일반적인 예의

1. 1994년도 GATT 제20조는 다음의 목적상 이 협정에 통합되어 이 협정의 일부가 된다.

- 가. 그 장의 규정이 서비스 또는 투자에 적용되는 한도를 제외하고, 제3장(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)·제4장(원산지규칙)·제5장(통관절차)·제6장(무역구제) 및 제14장(전자상거래), 그리고
- 나. 그 규정이 서비스에 적용되는 한도를 제외하고 제16장(정부조달)

2. GATS 제14조가호·나호 및 다호는 다음의 목적상 이 협정에 통합되어 이 협정의 일부가 된다.

- 가. 그 장의 규정이 서비스에 적용되는 한도 안에서 제3장(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)·제4장(원산지규칙)·제5장(통관절차)·제6장(무역구제) 및 제14장(전자상거래)
- 나. 제9장(국경 간 서비스무역)
- 다. 제10장(투자)
- 라. 제11장(통신) 및 제12장(금융 서비스), 그리고
- 마. 그 규정이 서비스에 적용되는 한도 안에서 제16장(정부조달)

제 21.3 조

국가안보

1.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.
 - 가. 공개시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당사국이 간주하는 정보를 당사국이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. 또는
 - 나.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당사국이 간주하는 다음의 조치를 당사국이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
 - (1) 무기·탄약 및 전쟁장비의 거래에 관련된 조치와 군사시설에 공급하거나 제공할 목적으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행하여지는 그 밖의 상품 및 재료의 그러한 거래 또는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된 조치
 - (2) 전시 또는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그 밖의 긴급상황시에 취하여지는 조치. 또는
 - (3) 핵분열성 및 핵융합성 물질 또는 그 원료가 되는 물질과 관련된 조치. 또는
 - 다. 국제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제연합헌장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

2. 당사국은 제1항나호 및 다호에 따라 조치가 취하여지는 경우 제 22.1조에 따라 이 협정의 이행을 검토하기 위한 회의 중에 그러한 조치와 그 종료에 대하여 타방 당사국에게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정보를 제공한다.

제 21.4 조 과 세

1. 이 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,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과세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.
2.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양당사국이 당사국인 조세협약상의 일방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 이 협정과 그러한 협약이 불합치하는 경우, 그 불합치의 범위 안에서 그 협약이 우선한다. 양당사국 간의 양자 조세협약의 경우, 그 협약상의 권한있는 당국이 이 협정과 그 협약 간에 불합치가 존재하는지를 결정하는데 단독책임을 진다.

3. 제2항에 불구하고, 제3.3조 및 동 조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은 1994년도 GATT 제3조가 적용되는 것과 같은 범위 내에서 과세조치에 적용된다.

4. 제10.13조 및 제10.19조는 과세조치가 동 조에 규정된 수용을 구성하는 범위 내에서 그러한 과세조치에 적용된다.²¹⁻¹⁾ 과세조치와 관련하여 제10.13조를 원용하고자 하는 투자자는, 제10.19조에 따라 통보할 때에, 그 과세조치가 수용을 수반하는지 여부의 문제에 대하여 먼저 제5항에 규정된 권한있는 당국에 조회하여야 한다. 권한있는 당국이 그 문제를 고려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, 또는 검토하는 데에는 동의하였으나 조회 후 6월 안에 그 조치가 수용이 아니라고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, 투자자는 제10.19조에 따른 중재의 청구를 제출할 수 있다.

5. 이 조의 목적상, **권한있는 당국**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.

21-1) 제10.13조에 관하여 과세조치가 수용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다음의 고려사항이 관련이 있다.

- (1) 조세의 부과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. 새로운 과세조치의 단순한 도입 또는 투자 한 건에 대하여 한 개 이상의 관할구역에서의 조세 부과는 그 자체로 저절로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.
- (2) 국제적으로 인정된 조세 정책-원칙 및 관행에 합치되는 과세조치는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. 특히, 조세의 회피 또는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과세조치는 일반적으로 수용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.
- (3) 특정 국적의 투자자나 특정한 개별 납세자를 겨냥하는 것과는 달리 비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과세조치는 수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다. 특정한 과세조치가 투자가 행하여질 당시 이미 유효했고 그 조치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었거나 달리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였다면, 그 조치는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.

가. 싱가포르에 대하여는, 재무부 재정정책국장 또는 그 승계인 또는 싱가포르가 지정하는 다른 공무원

나. 대한민국에 대하여는,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또는 그 승계인

[날짜]

대한민국 외교통상부
자유무역협정국장
김한수

김한수 국장 귀하,

본인은 2005년 월 일 [장소]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(“협정”)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.

위 협정에 기인하여, 본인은 협정 제21장(예외)과 관련하여 제21.3조에 따라 당사국은 중요한 통신 기반시설을 무력화하거나 훼손하려는 의도의 계획적인 시도로부터 그러한 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자국이 판단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양 당사국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.

귀하께서 귀 정부도 위에서 진술된 우리정부의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이러한 양해가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취급된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/서명/

[싱가포르 대표의 성명]

[직위]

[날짜]

[싱가포르 대표의 성명]

[직위]

_____ 귀하,

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05년 월 일자 귀하의 서한의 접수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.

“ (싱가포르측 서한 본문) ”

본인은 우리 정부도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이 양해가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.

/서명/

김한수

대한민국 외교통상부

자유무역협정국장